

1. 목적

본 지침서는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2. 적용범위

본 지침서는 당사와 거래를 실시하는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, 대금 지급, 납품, 계약 해지 전반에 대해 적용한다.

3. 계약 체결 인프라

당사의 협력업체 AVL에 신규 등록된 업체는 기본거래계약 체결 후 신규부품 개발시 품목별로 업체선정을 거쳐 양산업체로 선정되어야 비로서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게 되며, 업체선정 방식에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.

1) 심의입찰

업체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대상 업체의 가격, SQ등급, 생산장비 CAPA, 설계사양 등 주요 평가항목을 종합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

2) 전략구매

경쟁(심의)입찰 이외의 방식으로 단독업체, 신기술적용부품, 특허 등 기타 구매정책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것

3) 고객지정

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후가공 사양(REAL WOOD, 수압전사 등) 또는 제품(무드램프, USB HOLDER 등) 고객 설계 당시부터 지정업체로 선정하여 개발에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고객에서 선정하는 것

4.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

4.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

1) 서면의 사전교부

- ① 당사와 협력업체는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- 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당사가 교부한 발주서(전산발주서 포함)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하여야 한다.

2)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

- 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, 품질, 사양, 납기, 대금지급방법, 재료가격, 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, 운임,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물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 또는 협력업체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.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당사 또는 협력업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(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)부터 6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- 원재료가격의 변동 : 現시세 원재료가격이 기준 원재료가격 대비 5% 이상 변동하는 경우

- 설계변경·개선제안 등으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

- 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- ⑤ 당사는 원가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임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율을 제시하되,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, 납품업체 규모, 기술 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율을 책정하여야 한다.

3) 납기와 납품

- ① 납기란 개별계약(발주서)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,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 한다.
- ②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.
- ③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4) 객관적 검사기준

- ① 당사는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/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- ② 당사는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당사는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
5) 대금의 지급

- 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내지 동조 제8항을 준용한다.
- 6) 납품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
 - ① 납품 이후 발견되는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와 협력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반품 처리한다.
- 7) 계약의 해제, 해지
 - ① 계약의 해제, 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'최고없이 가능한 경우'와 '최고가 필요한 경우'를 구분하되 해제,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.
 - 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-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 - 상대방이 부도,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, 파산,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 - 상대방이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 - 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, 해지할 수 있다.
 -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, 납품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 -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납품업체의 기술,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
4.2 계약체결시 금지사항

- 1) 서면 미교부 행위
- 2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
 -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, 납품 업체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
- ④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납품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⑤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⑥ 자재의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⑦ 대금지급조건, 거래수량,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납품업체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
 - ⑧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,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⑨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,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 - ⑩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,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
- 3)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
- 설비완료 혹은 생산준비 완료 후 개발을 취소하거나 구두로 요구시 제시한 단가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
- 4)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
- ① 납품업체가 임직원을 선임,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
 - ②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선정,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
 - ③ 납품업체의 생산품목,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 - ④ 납품업체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
- 5)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
-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